

무역상무연구  
제67권  
2015. 8, pp. 69-95.

논문접수일 2015. 01. 31.  
심사완료일 2015. 02. 21.  
게재확정일 2015. 02. 24.

## 유럽의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연구\*

최 병 권\*\*

- 
- I. 서 론
  - II. 유럽전자결제제도의 일반적 고찰
  - III. 소액결제서비스시장의 EU 역내통합에 관한 개요와  
여타 국가의 대응
  - IV. 유럽의 전자결제제도의 시사점
  - V. 결 론
- 

주제어 : TARGET, SEPA, 전자결제제도

### I. 서 론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의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역내 국가 간 결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전자결제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전자지급결제제도는 그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한금융망의 BOK-Wire+, 일본은행의 RTGS-Xg, 미국 연준의 Fedwire, 싱가포르의 MEPS+, 독일의 RTGS plus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결제시스템은 민

---

\* 이 연구결과물은 2013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E-Mail : nangak@hanmail.net

간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서 운영주체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가 증권결제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도 2007년 11월 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 PSD)이 성립되었다. 이 지침은 EU 역내시장에서 소액결제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결제서비스기구를 통해 법규제상의 새로운 공급자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은 결제서비스업체가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외에도 결제서비스업체와 이용자간의 다양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각종 소액결제 서비스를 횡단적으로 규율하는 포괄적인 결제 법제가 되고 있다.<sup>1)</sup> 유로화를 기반으로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ingle Euro Payment Area : SEPA)을 설립한 EU는 유로화의 원활한 이용을 돕고, 결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역내 국가간 통합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및 EURO1을 구축하였다. 1999년 구축된 TARGET은 참가국 간 단일공동플랫폼(Single Shared Platform : SSP)에 기반한 차세대시스템(TARGET2)으로 전환되었다.<sup>2)</sup> 또한 EU 전체를 통합한 거액자금을 전자로 결제하는 시스템인 TARGET2는 2007년부터 상거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SEPA는 2008년에 입금이체(SEPA Credit Transfer : SCT)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 출금이체(SEPA Direct Debit : SDD)를 개시하였다.<sup>3)</sup>

한편 한국은 EU와 FTA의 체결을 통하여 교역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U는 전세계 GDP의 23.1%(16.7조 달러, 2013년 IMF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위 교역상대국이다.<sup>4)</sup>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무역결제업무에 있어 EU 전체를 통합하는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럽간에 교역확대에 따른 결제업무의 증가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금융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EU의 전자결제제도 중에서 소액결제서비스시장의 EU 역내 통합을 향한 대응을 분석하고 결제서비스지침의 목적과 본 지침의 구성을 설명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Trifonova, S., Financial Innovations in the Euro area Payment and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7853523>(검색일 : 2015.8.21)

2) 진재석, “유로지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4호, 금융결제원, 2008.

3) 이병렬, “EU의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타겟과 세파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p. 25.

4)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발효 3년차 교역·투자 동향 FTA 혜택품목 수출 증가 → 전체 수출 견인 및 투자 제고”, 보도자료, 2014, p. 1.

## II. 유럽전자결제제도의 일반적 고찰

### 1. 유럽전자결제제도의 개요

TARGET 시스템의 구축배경을 보면, EU는 20세기말부터 유럽전체를 영업범위로 하면서 거래자금을 전자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럽 각국이 운용 중인 거래전자결제 시스템들을 상호 호환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sup>5)</sup> 그 후 1995년 5월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 EMI)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약 4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1999년에 EU는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 EMU)의 출범과 함께 EU 지역에서 유로화를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 : RTGS) 시스템, 즉 원지시인이 지급지시의 전송을 요청할 때 건 별로 지급지시를 즉시 처리가 가능한 TARGET 시스템의 가동을 시작하였다.<sup>6)</sup> 즉, 유럽에서 국가간 거래결제시스템인 TARGET이 활성화됨에 따라 EU 회원국간 자금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최근에는 RTGS의 영업시간 중 결제종료를 통한 결제리스크 방지효과와 이연차액결제(Deferred Net Settlement : DNS) 시스템의 유동성 절약효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혼합형 결제시스템이 개발되어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혼합형 결제시스템은 연속차액결제(Continuous Net Settlement : CNS) 시스템과 RTGS 시스템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CNS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차액결제를 실시하는 DNS 시스템과 달리 영업시간중 지속적으로 차감 및 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가동이 대표적이다. 한편 유동성 절약형 RTGS 시스템은 참가자의 지급지시 가동시에 양자간 혹은 다자간에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법적으로는 각 참가자의 지급지시가 총액기준으로 결제되지만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액결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유동성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동성 절약형 RTGS 시스템의 사례로서는 EU의 TARGET2 가동을 들 수 있다.<sup>7)</sup>

5) 진재석, 전계논문, pp. 12~15.

6) 이병렬, 전계논문, pp. 26~27.

7)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 p. 282 ; 日本銀行, 決済システムレポート2007 -

한편 유럽은 TARGET2의 설립과 별도로 2002년 유로화 사용 이후 EU 역내 국가 간 금융시장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제도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개혁하여 SEPA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SEPA는 역내 국가 간 소액지급결제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간 자금이체 및 카드사용 등 지급거래와 관련된 처리절차 및 제도를 표준화한 시스템이다. SEPA의 설립배경을 보면 EU는 2002년도에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역내국가 간 비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에 지나치게 높은 송금수수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복잡한 거래절차와 카드사용에 대한 국가별 사용해도 금액까지 상이하여 결제시스템이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유럽지역의 은행 및 금융기관 협회들은 2002년 3월에 유럽은행연맹(European Banking Federation : EBF) 워크숍에서 공감대를 나눈 후에 2002년 6월 드디어 SEPA 설립을 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sup>8)</sup> 이 백서에 따라 2002년 6월에 SEPA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65개 유럽지역은행 및 3개의 유로지역 금융기관협회 및 유로은행협회(European Bankers Association : EBA)로 구성된 유럽지급위원회(European Payment Council : EPC)를 설립하였다.

SEPA는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유로권의 국가간 결제를 국내결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통합결제서비스시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sup>9)</sup> SEPA에서는 각국마다 다른 결제서비스 사무처리절차 등의 실무관행상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대응과제로 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실무면에서 조화를 향한 대응에는 유럽의 주요 은행 등이 참여하는 EPC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PC는 2001년의 국가간 결제규정에 따라 EU 역내 국가간 결제서비스 사무처리의 비용절감이 은행산업 전체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통해 SEPA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다.<sup>11)</sup>

EPC는 SEPA에서 관계자 간의 의견조정을 실시하면서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공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업체 간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결제서비스인 계좌이체, 계좌 인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공통 규칙, 예컨대 서비스제공자가 채택해야 할 메시지 포맷 등의 기술 표준과 서비스내용에 관한 최저기준 등이

2008, 2008, pp. 54~56.

8) 백미연,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에서의 범 유럽 지급결제수단 도입 추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7호, 금융결제원, 2007, pp. 42~48.

9)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ve Paper on SEPA Incentives, 2006.

10) *Ibid.*, p.6.

11) 여기에는 EU 회원국 은행 이외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EPC하에 책정되어 있다. 은행 등 각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공통규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로 경쟁하게 된다.<sup>12)</sup>

EPC는 2004년에 SEPA 추진을 위한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2004-2008 SEPA 로드맵을 발표하였다.<sup>13)</sup> 이 로드맵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 동안 전체준비기간을 설계단계, 실행단계 및 이행단계 등 세단계로 나누고 있다.<sup>14)</sup>

거액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있어서도 역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네트워크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간 거래를 처리하는 트렌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 간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계는 주로 지역별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결제를 처리하는 통합 결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특히 SEPA를 결성한 유럽지역은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2, EURO1 외에도 국가 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인 STEP1, STEP2를 각각 2000년, 2003년에 구축한 바 있다. 두 시스템은 EURO1의 운영기관인 EBA Clearing사가 운영 및 관리하며, EURO1을 통해 최종결제를 처리한다.

한편 네트워크 운영기관, 은행 등 개별기관이 협력기구를 결성하여 국가 간 소액결제거래를 처리하는 시도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협력기구는 별도의 통합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대신, 참가기관간 공통규정 및 처리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간 거래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는 유럽의 직불카드 운영기관이 2007년 조직한 EAPS(Euro Alliance of Payment Schemes)와, 프랑스, 독일의 주요 은행이 조직한 Monnet, 국가 간 ACH(Automated Clearing House)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IPFA(International Payments Framework Association) 등이 해당된다.<sup>15)</sup>

EAPS와 Monnet은 SEPA 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유럽 직불·신용카드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양 기구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온 카드의 운영·거래방식 대신 EPC가 마련한 SEPA 카드지급 기본구조(SEPA Card Framework)를 준수함으로써 국가 간 카드거래를 처리한다. 또한 이들은 참가기관이 보유한 ATM·POS 네트워크 및 은행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래를 처리함으로써,<sup>16)</sup> 과거 VISA 등 글로벌 카드사의 네트워크를 경유하던 것에 비해 거래 처리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2) Bollen, R., "European Regulation of Payment Services—The Story So Far",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Regulation*, 22 (9), 2007, p. 536.

13) 이병렬, 전제논문, pp. 27~28.

14) <http://www.ecb.europa.eu/paym/sepa/about/html/index.en.html>, 16 Jan., 2015

15) 김서영, "지급결제제도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1, p. 22.

16) EAPS는 참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ATM·POS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국가간 직불카드 거래를 처리하며, Monnet은 개별은행 간 연계를 통해 직불·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한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지급결제 및 증권결제시스템과 인프라의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Eurosystem과 ECB는 통화를 처리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신중한 설계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CB는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작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sup>17)</sup>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BIS) 및 특히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 CPSS)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표준설정기관이다. CPSS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추진을 통해 금융시장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된 엄청난 양의 환경에서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의 인식이 특히 증가한다. BIS는 관련 안정성 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주요 표준 및 최적 관행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CPSS의 기본코드, 표준 및 최적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시스템에 대한 핵심원칙이며(BIS(2005)),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BIS(2007))와 중앙 거래상대방에 대한 권고이다(BIS(2004)). 이 기준은 세계금융체제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백미연(2007), 한국은행(2008), 이병렬(2013), Humphrey(2009), Skinner(2008), Van Empel(2009), ECB(2007a), EPC(2007b), 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2007), 吉村昭彦·白神猛(2009), 中村眞志(2009)는 유로소액지급 및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접근기준, 지급시간, 가격정책과 기타 운용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주요한 점은 유로지역에서 소액지급통합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大橋千夏子(1998), 한국금융연구원(2008), 홍경식(2012), Bech and Soramaki(2001), Selgin(2004), Bolt and Humphrey(2005), Holthausen and Rochet(2006), ECB(2007b), Carbó-Valverde and Liñares-Zegarra(2009), 株式會社NTTデータ經營研究所(2015), 野村敦子(2015)에서 분석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지역에서의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비교분석은 이병렬(2008), Martin(2005), Millard and Saporta(2005), Haldane et al.(2008)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 및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하여 광범한 국가보고서가 출판되었다. 예컨대 Kalckreuth et al.(2009)은 독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으며 Merrouche and Schanz(2008)은 영국의 결제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으며, De Sèze(2006)은 TARGET2 프로젝트와 프랑스은행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다. España and Gorjón(2005)은 스페인에서의 TARGET2와 SEPA 그리고 이들의 도입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17) Trifonova, S., *op. cit.*, p. 2.

### Ⅲ. 소액결제서비스시장의 EU 역내통합에 관한 개요와 여타 국가의 대응

#### 1. 개 요

EU는 1999년에 발표된 금융서비스행동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 FSAP, 1999-2005)을 통하여 회원국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sup>18)</sup>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2005년 발표된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s, 2005-2010)에 근거하고 있다.<sup>19)</sup>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금융시장 통합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 금융시장 통합정도 등을 분석한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Report”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sup>20)</sup>

EU 금융자본시장의 역내통합에서는 금융기관 간의 고액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액결제분야에 비해 소액분야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1)</sup> 이것은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예컨대 거액결제분야에서는 1999년 1월 유로화 도입에 맞추어 ECB 및 유로 참가국의 각국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EU 회원국의 RTGS 시스템을 연결하는 TARGET가 가동됨으로써 중앙집중식 결제가 실현되었다.

한편 소액분야에서 유로 도입 후에도 기술적·법적 장벽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EU 역내 공통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각 EU 회원국의 결제서비스시장이 분단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sup>23)</sup>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소액결제에 사용되는 유로 현금이 유로권 전역에서 유통을 시작한 2002년 1월 이후 대응의 필요성이 더 선명하게 의식되게 되었다.

EEC와 ECB는 결제시스템 단일화를 위해 역내자금결제 및 금융시스템을 총괄하는 관련 기술지원에 착수하였다. EPC는 2005년 12월 PSD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

18) *Ibid.*, p. 27.

19) European Commission, *op. cit.*, 2005a, p. 3.

20)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s Policy 2005 - 2010, 2005, p. 4.

21)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Report 2007, SEC (2007) 1696, 2007, p. 6.

22) *Ibid.*, p. 17.

23)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p. cit.*, 2007, p. 13, p. 16.

로 역내지급결제서비스를 전자신용결제(ECT), 직불카드결제(SDD) 및 신용카드결제(SCF) 세부분으로 분할하여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sup>24)</sup> 이와 함께 EBA는 전유럽 자동결제시스템(PE-ACH)을 구축하여 은행들에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결제단말기 사용이 개시되는 2008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sup>25)</sup>

2008년 1월부터 SEPA 전용단말기가 EU 회원국 내에서 사용가능하게 되고 이 단말기의 설치 및 사용을 확대하여 2010년까지 결제시스템 단일화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모바일업체 및 일반 소매기업 등에게도 단일결제망을 통한 결제업무를 허용할 방침임에 따라 향후 은행신용카드 이외의 다양한 결제업무 제공기관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영업시장이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역내 해외은행과의 상품제공과 고객유치경쟁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EU와 각국 금융당국들은 역내은행간 M&A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은행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역내 금융기관들 간 통합 움직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sup>26)</sup>

## 2. EU 수준의 법적 틀의 개요와 여타 국가의 대응

### 1) 결제서비스지침 제정 이전의 EU의 법적 틀

#### (1) 전자결제권고(1997년)<sup>27)</sup>

전자결제권고는 결제의 효율성을 전자화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지시가 이루어지는 결제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신뢰 향상 및 유통업체에 보급을 도모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제정 목적

24) 中村眞志, “單一ユーロ決済権 (SEPA) の形成に関する一考察”, 經濟學研究, 第17卷第2号, 2009, pp. 66~67.

25) 株式會社NTTデータ經營研究所, “歐米の小口決済システム(ACH)及び銀行のシステム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2015, p. 73.

26) 한국금융연구원, “유럽연합결제시스템 단일화 개정안 마련추진”, 주간금융브리프, 16권 15호, 2007, p. 23.

27) 97/489/EC: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30 July 1997 concerning transactions by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and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issuer and holder, OJ L 208, 2.8.1997, pp. 52~58.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권고는 원칙적으로 ①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인로부터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결제거래,<sup>28)</sup> ② 은행 등(CD/ATM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한 현금인출 및 전자화폐의 입출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은행 등)와 이용자(전자결제수단의 보유자)의 관계에 관한 EU 수준의 법적 틀은 이미 1987년에 전자결제에 관한 행위 준칙에 대한 권고가 채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권고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권한 거래(*unauthorized payment order*)로 인한 손실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였다.<sup>29)</sup> 이에 따라 전자결제권고는 전자결제에 관련된 행위준칙에 관한 권고를 실질적으로 개정·강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발행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및 발행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규칙을 도입함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결제권고는 결제서비스지침에도 이어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많은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권고라는 연성법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실시상황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sup>30)</sup>

## (2) 국가간 이체지침(1997년)<sup>31)</sup>

국가간 이체지침은 제정 당시 유로 도입(1999년)에 의한 경제·통화통합을 향한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EU 역내에서 국가간 결제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그것을 신속·정확·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의 전자결제권고가 전자결제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결제수단에 대한 신뢰향상 및 이용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 지침은 유로도입을 앞두고 EU 역내에서 국가간 계좌이체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고 유로 도입을 촉진 지원 하는 목적에 역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EU 역내 국가간 계좌이체에 해당되며, 각 EU 회원국의 국내에서의 계좌이체는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50,000 유로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이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32)</sup> 그 밖에 적용대상을 계좌이체에 한정하고 계좌인출과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28) 그러나 금융기관이 지급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결제거래이더라도 전자결제권고는 적용되지 않는다(동 권고 제1조 제1항 제(a)호).

29) Bollen, Rhys, *op. cit.*, p. 459.

30) *Ibid.*, pp. 461~462.

31) Directive 97/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1997 on cross-border credit transfers, OJ L 43, 14.2.1997, pp. 25~30.

의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침내용을 보면 계좌이체에 소요되는 기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며 은행 등의 계좌이체를 할 업체의 정보제공의무, 의뢰인의 이체지시대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의 자금환급보장 (money-back guarantee) 등 EU 역내에서 국가간 계좌이체를 할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기준을 정하고 있다.<sup>33)</sup> 또한 이용자의 불만신청과 구제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정비를 각 EU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간 이체지침에 대해서는 EU 역내에서 국가간 계좌이체의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sup>34)</sup>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에서 이 지침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 및 불만신청·구제절차에 대해 충분한 국내실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 EU 회원국에서 그 상황을 봐도 지급인 측 은행과 수취인 측 은행의 쌍방으로부터 수수료가 부과되고(double charging), 또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환급보증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등의 예가 계속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다.<sup>35)</sup> 또한 수수료 인하라는 면에서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있다.<sup>36)</sup>

32) 예컨대 국가간 이체지침을 독일에서 국내에 실시하기 위해 독일이체법은 75,000 유로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EU 역내 국가간 계좌이체와 독일에서의 계좌이체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국가간 이체지침 보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33) 이병렬, “전자결제제도에서 거래은행간 자금이체에 따른 주요쟁점 비교-미국 통일상법전 제 4A편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2호, 2011, pp. 23~40.

34) 구체적으로는 EU 역내에서 국가간 계좌이체의 실행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1993년 및 1994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각각 4.61일, 4.79일이었지만 200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2.97일 단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Retail Banking Research,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a Common and Coherent Application of Directive 97/5/EC on Cross-Border Credit Transfers in the 15 Member States, Transfer Exercise, Report for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DG Markt), 2001, p.52).

35)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97/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1997 on Cross-Border Credit Transfers, COM (2002) 663 final, 2002.

36) 구체적으로는 100 유로의 EU 역내 국가간 계좌이체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1993년 및 1994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각각 23.93 유로(환산액), 25.41 유로이었지만 국가간 계좌이체지침의 국내실시 후인 2001년에도 24.09 유로에 그쳤다(Retail Banking Research, *op. cit.*, 2001, p. 54).

(3) 국가간 결제규정(2001년)<sup>37)</sup>

국가간 결제규정은 EU 역내 국가간 결제거래 수수료가 국내 결제거래 수수료보다 높은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유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또한 그러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자동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sup>38)</sup>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5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EU 역내 국가간 결제거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제거래는 계좌이체 이외에 전자결제수단에 의하여 실행되는 결제거래 및 수표에 의한 결제거래가 포함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결제통화는 위의 목적을 반영하여 유로화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수수료 수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과 5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EU 역내 국가간 계좌이체 및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지시가 이루어지는 결제거래에 대해 국내거래와 다른 수수료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EU 역내 국가간 결제거래에 대해 국내 결제거래와 동일 수준의 수수료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자는 은행 등이 제공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국제은행계정회원(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s : IBAN)과 은행인식코드(Bank Identifier Codes : BIC)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SEPA도 참가자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법적 체계로서는 SEPA로의 이행을 위한 일몰규정(SEPA migration end-date regulation)이라고 하는 Regulation No.260/2012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로화를 이용하여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를 위하여 전 유럽에 적용되는 규정을 2010년 12월에 제정하여 2012년 2월에 유럽의회가 채택하여, 2012년 3월 3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EU 내에 유로화를 사용하여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를 하는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 인하를 도모하는 것이 큰 핵심이 되는 사무처리의 자동화를 위해 IBAN, BIC, 금융서비스 메세지표준(ISO 20022 XML)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9)</sup> 또한 DL 규정은 EU 국가 중 유로화를 사용

37) Regulation (EC) No 2560/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01 on cross-border payments in euro, OJ L 344, 28.12.2001, pp. 13~16.

38)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p. cit., 2006a, p. 15 ;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560/2001 on Cross-Border Payments in Euro, Annex to the Report, SEC (2008) 141, COM (2008) 64 final, 2008, pp. 9~10, 13).

3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oss-Border Payments in Euro, COM (2001) 439 final, 2001, p. 5.

하는 국가들의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의 개시와 처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에게는 2014년까지 SEPA로 이행하여야 하며, 비유로지역 15개 국들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SEPA로 이행하여야 한다.<sup>40)</sup>

이 규정이 채택하는 가격규제라는 직접적인 접근은 주로 실무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이 강구된 것은 유로도입에 의해 유로 참가국들의 공동통화권이 되는 이상, 유로에 의한 결제거래는 그것이 한 국내의 것이든 다른 유로 회원국을 위한 것이든 동일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EU 당국자의 강한 의향이 있었다.<sup>41)</sup> 이 규정은 EU 역내의 국가간 결제거래의 수수료 절감을 실현했으며,<sup>42)</sup> 결제서비스의 주된 제공자인 은행에 대해 소액결제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EU 역내 공통인프라의 구축에 협력하여 대처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었다.<sup>43)</sup>

## 2) EU의 추진중인 정책

EU는 진전이 더딘 소매금융서비스 시장의 통합,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s, 2005-2010년)에 근거하고 있다. SEPA는 국경간 거래에서 모든 전자 결제 수단(예: 신용카드, 직불카드, 자금이체 등)이 국내거래 만큼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법적 근거는 결제서비스지침이며 또한 은행업계 자율로 추진된다. 그 시행은 2008년 1월 시행되었으며, 2010년 말부터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SEPA의 촉진을 목적으로 SEPA 권내에서 위의 금액의 국내결제와 국가간 결제에서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하였다. 2001년 규칙에서는 ATM의 현금인출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009년 규정에는 송금·인출·카드 등의 비현금결제도 포함하여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4년 1월 EC는 유로권내의 실제의 이행상황을 근거로 SEPA 기법의 통일을 예정하고 있던 2014년 2월-8월까지 연장하고 즉 6개월 동안은 SEPA 기법 이외의 지급결제기법도 유효하게 하기 위한 개정을 제안하였다. 2월에

40) 이병렬, 전제논문, 2013, p. 29.

41) Bolkestein, Frits, Speech at the Conference Organi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Payments in Euro in the Internal Market, Speech/01/402, 2001.

42) 100 유로의 EU 역내 국가간 결제에 관련되는 평균 수수료는 국가간 결제규칙 의 시행 전인 2001년에는 23.6 유로이었지만, 시행 후인 2005년에는 2.46 유로까지 감소했다는 조사보고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The Impact of Regulation (EC) No 2560/2001 on Bank Charges for National Payments, SEC (2006) 1783, 2006, p. 9).

43) Löber, Klaus, "The Payment Services Directive: New Payments Legislation in the Single Market,"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23 (2), 2008, pp. 78-80.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SEPA 규칙의 개정이 승인되었다. 그 결과로서 유로권 내의 이행기한은 2월 1일까지 변경되지 않았지만 결제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2014년 8월까지 SEPA 기법 이외의 결제를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sup>44)</sup>

### 3) 여타 국가의 대응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킹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 및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발생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으며,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통지기간 또는 책임부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sup>45)</sup>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무권한 거래에 따른 이용자보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EFTA)과 규정 E에 따르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바탕으로 각각 지급결제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 PSR)과 민법을 따르고 있으며, 호주는 전자지급결제규약 등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용자의 무권한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통지 여부 및 그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매체의 도난 또는 분실 사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통지기간에 따라 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영업일 60일의 통지기간 기준을 정해놓고, 세부적으로는 접근매체의 도난 또는 분실 여부에 따라 통지기간을 영업일 2일 이내, 영업일 3-60일 이내, 영업일 60일로 나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책임범위를 면제하는데, 최대 50달러 또는 500달러, 피해액 전부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은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이 각국의 전자금융 환경에 따라 자국법에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통지기간 및 책임범위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다만, 통지기간은 조사국가가 모두 지침 상의 통지기간인 13개월을 수용한 반면, 이에 따른 이용자의 책임부담 금액은 독일이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150 유로, 영국이 하향조정하여 50파운드로 정하고 있다.

44) 株式会社NTTデータ経営研究所, *op. cit.*, pp. 70~71.

45) [http://www.boannews.com/security\\_contents/info/list.asp](http://www.boannews.com/security_contents/info/list.asp)

호주는 미국, EU 등과 같이 무권한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통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책임부담금액을 최대 150 호주달러로 정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규제법규가 자율규약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상세하지만 구속력 측면에서 다소 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법규준수를 감독하고, 17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해당 규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용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여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IV. 유럽의 전자결제제도의 시사점

### 1.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공평한 접근

업체간 자금결제시스템의 운영이 특정업체(예 : 은행)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자, 특히 새로운 시장진입자로서의 결제서비스기관에 대해서 해당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어떤 조건에서 인정될지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자금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접속에 일정한 합리적인 제약을 부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결제서비스지침은 EU 회원국에 대해 결제서비스 기관을 포함하는 결제서비스업체의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접속에 대한 규정이 차별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며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비해 상당한 것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접속기준은 자금결제시스템을(추상적 위험이 아닌) 특정된 구체적인 결제위험, 운영상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금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결제서비스업체의 접속에 제약을 부과하는 내용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공평한 접근이 요구되는 자금결제시스템은 여러 신용카드업자 등 사이에서 자금결제를 하는 시스템과 계좌이체 또는 계좌인출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한편 EU 최종지침<sup>46)</sup>을 바탕으로 한 각 EU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중요지급결

46) Directive 98/2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settlement

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으로 지정된 자금결제시스템<sup>47)</sup>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안정의 관점에서 접속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 지침상의 자금결제시스템 접속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 기업그룹에 속하는 결제서비스업체에 의해서만 이용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sup>48)</sup>

BIS의 CPSS는 2001년 1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10대 원칙과 중앙은행의 4대 책무가 수록되어 있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FSAP)에 포함시켜 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즉 결제위험 관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핵심원칙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및 세계은행의 회원국으로서 BIS 제정 핵심원칙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sup>49)</sup>

## 2. 결제서비스업체의 정보제공의무

결제서비스지침은 결제서비스업체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50)</sup> 이 배경에는 EU 역내에서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이 조화됨에 따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결제서비스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업체의 서비스 내용개선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견해가 있다.<sup>51)</sup> 또한 이러한 조화에 의해 EU 가입국별로 다른 규제의 준수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며, 업체가 여러 EU 회원국에 있어서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finality in payment and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OJ L 166, 11.6.1998, pp. 45~50.

47) Designated Payment & Security Settlement Systems (Article 10 of Settlement Finality Directive 98/26/EC) available at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financial-markets/settlement/index\\_en.htm](http://ec.europa.eu/internal_market/financial-markets/settlement/index_en.htm) [as of 17 November 2008].

48) 吉村昭彦·白神猛, *op. cit.*, pp. 150~151.

49) 한국은행, *전계자료*, 2009, p. 16.

50) European Association of Public Banks (EAPB), A Possible Framework for the Single Payment Area in the Internal Market, Position Paper of the EAPB on the Working Document of the Internal Market DG, 2002, pp. 24~25.

51)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concerning a New Legal Framework for Payments in the Internal Market, Consultative Document, COM (2003) 718 final, 2003, p. 26.

쉽게 되는 것도 다른 EU 회원국 시장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촉진에 이바지한다는 기대도 있다.<sup>52)</sup> 이 지침의 제정과정에서 금융산업은 EU 지침에 의해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한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간에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에 대한 조화를 실현하려면 은행 이외의 주체도 포함한 폭 넓은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업계의 자율규제에 의한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하여,<sup>53)</sup> 지침에 의한 법적 뒷받침이 있는 대응을 목표로 했다.

결제서비스지침은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도한 정보제공이 오히려 이용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폐해의 방지와 결제서비스업체 측의 법규준수도 비용의 최소화도 중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하나의 현상으로 본 지침은 거래유형을 일회성의 결제거래와 기본구조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결제거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결제서비스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금으로 대표되는 일회성의 결제거래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정보를 중심으로 한 후 항상 결제서비스업체의 주도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보제공의무는 간결한 내용에 그치도록 하게 되었다. 한편 이 지침은 해당 기본구조계약에 대해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계약의 변경 및 종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결제서비스업체는 원칙적으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의 적용개시의 2개월 전에 변경내용을 이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해약고지 기간에 대해 사전합의가 없는 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합의에 따라 해약고지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계약과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계약은 12개월 경과 후의 해약에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해약고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은 업체변경을 희망하는 이용자에 의한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스위칭 비용 절감),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54)</sup>

또한 결제서비스의 이용자가 소비자 이외의 자인 경우는 해당 이용자와 결제서비스업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기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소액결제거래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결제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정보제공의무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

52) *Ibid.*

53)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concerning a New Legal Framework for Payments in the Internal Market, Consultative Document, COM (2003) 718 final, 2003, p. 26.

54) 吉村昭彦·白神猛, *op. cit.*, pp. 151~153.



### 3. 무권한 거래의 결제서비스업체와 이용자 간의 손실분담규칙

무권한 거래는 금융거래를 이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 본인의 정당한 거래지시를 해킹하여 금액 및 수익자의 변경 및 금융거래처리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무권한 금융거래가 이룬다.<sup>55)</sup>

EU에서도 카드에 의한 결제나 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결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결제에서 결제수단이 잘못 사용될 것 등에 따라 무권한 거래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결제서비스지침은 사기 방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과 시장전체의 효율성·안전성 확보 모두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sup>56)</sup> 무권한 거래의 결제서비스업체와 이용자 간의 손실분담규정에 대해 체계를 세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기존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규정한 1997년의 전자결제권고에도 규정되어 있었다. 전자결제권고는 무권한 거래시 손실분담규정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sup>57)</sup> 결제서비스지침은 전자결제권고의 규정내용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적용대상은 이 권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결제수단으로 결제지시가 있는 결제거래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결제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각종 결제수단의 특성에 따라 다른 규정을 설정하지 않고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일률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sup>58)</sup>

결제서비스지침에서는 무권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인에게 결제거래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하며, 또한 무권한인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업체 측에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무권한 거래의 발생위험을 줄이고 무권한 거래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결제수단의 도난이나 분실, 시스템에 대한 무단침입이나 위조 등 부정이용의 발생사실을 즉시 결제서비스업체에 통보하는 인센티브를 지급인에게 부여하기 위해, 무권한 거래가 이 통지 전후의 어느 것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인의 손실부담의 위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는 지급인은 도난이나 분실, 시스템에 대한 무단침입이나 위조 등 부정이용이 발생하였음을 통지 후에

55) 이병렬,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고객보호관련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1권 1호, 2009, pp. 36~37.

56) European Commission, *op. cit.*, 2003, p. 53.

57) *Ibid.*

58)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p. cit.*, 2005, p. 101.

행해진 무권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무권한 거래가 해당 통지 전에 행해진 경우 해당 무권한 거래가, ① 결제수단의 도난 또는 분실에 의한 것인 때에 지급인은 150 유로를 상한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고, ② 시스템에 불법침입이나 위조 등의 결제수단의 부정이용으로 발생하고 또한 지급인이 비밀번호 등 본인 확인수단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해태한 때에 지급인은 150 유로를 한도로 손실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③ 지급인은 결제수단 이용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며, 이것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 유로의 상한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무권한 거래 방지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지급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급인은 위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무권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59)</sup>

또한 지급인이 손실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무권한 거래의 통지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현저한 지체없이 해당 계좌인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결제서비스업체는 지급인이 그러한 통지를 한 것을 나중에 증명할 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보관하여 지급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이 결제서비스지침은 무권한 거래의 미연 방지 및 피해확대방지, 피해 발생시 분쟁처리의 원활화를 위해 지급인, 결제서비스업체 중 더 쉽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취할 수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각각에는 중층적인 형태로 의무를 할당하고 의무이행의 형태에 따라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 4. 결제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기간 단축

결제서비스지침에서는 결제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기간(예: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가 지급인으로부터 결제지시를 받은 후 수취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될 때까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고, 국가간 이체지침이 이미 대상으로 하고 있던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그 실행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가간 이체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계좌인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결제거래 일반에 확대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해 새롭게 적용대상이 된 계좌인출 등의 수취인의 지시에 의한 결

59) 吉村昭彦·白神猛, *op. cit.*, pp. 153~155.

제거래에 대해서는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는 수취인의 결제서비스업체를 통해 결제지시를 수령하고 그에 따라 수취인의 결제서비스 업체에 입금자금 상당액을 인수인도하게 된다. 이러한 결제거래에 대해 본 지침은 수취인의 결제서비스업체가 수취인으로부터 결제지시를 받은 후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에 동 지시를 전달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취인과 수취인의 결제서비스업체의 합의에 따르면 된다. 그 후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가 이 지시를 수령한 후 수취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인의 지시에 의한 결제거래와 같은 규칙으로 한다.

유럽위원회는 결제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한 이유로서 국내의 결제거래에 대해 결제서비스지침이 요구하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서의 실행을 결제서비스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EU 회원국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른 EU 회원국의 결제서비스업체도 같은 기간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sup>60)</sup> 또한 유럽위원회는 SEPA의 도입·보급을 위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 공통규정을 준수한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회원국마다 독자적인 국내규정 하에 제공되어 온 기존의 결제서비스보다 뒤 떨어지는 내용이 되면 이용자들이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SEPA가 목표로 하는 시장주도에 의한 새로운 결제서비스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있는 규칙을 설정함에 따라 결제거래의 빠른 실행이라는 면에서도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기존 서비스 이상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은 SEPA의 성공, 나아가 EU 역내시장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61)</sup>

은행업계에서는 EU 지침에 의해 결제거래의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EU 전체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으며,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sup>62)</sup> 그 후 지침의 제정과정에서는 허용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일자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어 유럽의회에서는 같은 기간을 2영업일로 하는 수정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유럽각료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제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기간을 당초 안에서는 그대로 1영업일로 하는 한편, 위 이행조치를 2012년 1월 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60) European Commission, *op. cit.*, 2007.

61) 吉村昭彦·白神猛, *op. cit.*, pp. 156~158.

62) 예컨대 European Payments Council(EPC), Response to the EC Communication on a New Legal Framework for Payments in the Internal Market, Doc EPC-0464/04 Version 1.0, 2004, p. 36 참조.

## 5. 결제서비스업체의 책임

자금환급보증(*money-back guarantee*)은 금융기관(수신은행)이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승낙한 후 해당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아 자금이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전송자의 계정에서 이미 출금된 자금을 금융기관(수신은행)이 다시 환급해줄 의무를 말한다.<sup>63)</sup> 자금환급보증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지급지시금액을 금융기관에게 전송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지급지시에 명시된 수익자의 계정을 발견할 수 없거나 지급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아 자금이체절차가 중단된 경우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미국은 금융기관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여 고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sup>64)</sup>

한편 결제서비스지침은 결제서비스업체에 이른바 자금환급보증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지시한 수취인에게 자금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결제서비스업체의 무과실책임을 널리 인정함으로써 이용자보호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지침 이전에도 국가간 입금지침상에 자금환급보증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지침은 자금환급보증에 기초하여 환급해야 할 금액의 한도를 12,500 유로로 한 것 이외에도 적용대상도 EU 역내의 국가간 계좌이체에 한정했다. 결제서비스지침은 자금환급금액의 상한을 제거한 것 이외에도 국내 결제거래 및 기타 결제거래(예: 계좌인출이나 카드결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등 자금환급보증에 의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다.<sup>65)</sup>

결제서비스지침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보면 계좌이체와 같이 결제거래가 지급인의 기동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인에게 해당 결제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결제거래가 실행되지 않거나 결제거래의 실행에 흠결이 있는 경우<sup>66)</sup>에는 지급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자금(과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에 항변의 수단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는 불가항력의 주장이 가능한 외에<sup>67)</sup> 수취인의 결제서비스업체가 자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고 그 경우에는 수취인의 결제

63) 이병렬, 전계논문, 2011, pp. 23~40.

64) 강원진·이병렬, “전자자금결제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 pp. 32~33.

65)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p. cit.*, 2005, pp. 107~108.

66) 결제거래의 실행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결제지시의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이다.

67) Bollen, R., *op. cit.*, 2007, p. 461, p. 465.

서비스업체가 수취인에게 결제거래를 결제지시되도록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sup>68)</sup> 또한 결제거래가 결제지시되도록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통지가 현저하게 지연되어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이 지시한 IBAN와 BIC 등 수취인의 계좌 정보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 대해서도 결제서비스업체는 책임을 면한다. 이 밖에 결제거래가 실행되지 않거나 결제거래의 실행에 흠결이 있는 원인이 해당 결제거래에 관여하는 다른 결제서비스업체와 통신업체 등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지급인에게 자금환급을 한 지급인의 결제서비스업체는 이러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sup>69)</sup>

한편 결제서비스지침, 결제거래가 실행되지 않거나 결제거래의 실행에 흠결이 있는 점에 기인하여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존재하는 결제거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등에서 발생한 결과손해<sup>70)</sup>의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지침은 결과손해의 보상을 포함하여 자금환급보증에 따라 책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보상은 결제서비스업체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각 EU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결과손해의 보상내용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 있었다.<sup>71)</sup> 결과손해 보상 자체의 시비에 대해서는 결제서비스업체는 개별 결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관계를 거의 파악하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미래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위험은 위험보험료로서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 V. 결 론

EU 2002년 유로화 사용 이후 역내 국가간 투자증대와 금융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TARGET 시스템이 구축되어 상거래에 적용되

68) 이 경우 수취인의 결제서비스업체는 즉시 해당 자금을 수취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75조 제1항).

69) EPC, *op. cit.*, 2004, p. 28 ; EAPB, *op. cit.*, 2002, p. 10.

70) 예컨대 계좌이체 지연을 이유로 수취인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지급인은 이 계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지급인에게 생기는 불이익 등이 결과손해의 문제로 될 수 있다.

71) European Commission Internal Market DG, *op. cit.*, 2002b., p. 31.

면서 유럽이 하나의 통합된 금융결제시스템으로 위상을 제고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유럽은 기존의 TARGET 시스템보다 보편화되고 접근성이 우수한 TARGET2라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구상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7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단일유로 지급결제지역인 SEPA를 출범시켰다. 이제 유럽의 각국들은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단일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거액 자금의 이동은 TARGET2시스템을 통해, 소액자금의 이동은 SEPA를 통해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제서비스지침의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제서비스지침은 계좌이체, 계좌인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 등의 소액결제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까지 법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인 결제서비스 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소비자인지 여부의 지표로 결제서비스업체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및 결제서비스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에 결제서비스지침이 결정내용과 다른 합의를 할 여부를 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무권한 거래의 결제서비스업체와 이용자 간의 손실분담 규칙을 규정함에 있어 무권한 거래의 피해자가 된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결제서비스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무권한 거래의 미연 방지, 피해확대 방지, 피해 발생 시의 처리원활화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무권한 거래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결제서비스업체 간의 평등한 경쟁 조건의 확보를 위해 소액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체간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 결제서비스업체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일회성 결제거래와 지속적인 결제거래를 구별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정보제공이 오히려 이용자의 판단을 방해한다는 폐해를 방지하고 업체 측의 법규준수 비용의 최소화에도 배려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ECB는 자국 금융시장의 상황, 자국내 영업중인 금융기관들의 국외담보 수요 및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외담보수용 여부 및 운영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담보 수용을 위한 시스템 이용에 대한 위험관리비용과 국외담보 수용에 따른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외담보수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외담보의 이체에 이용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각국의 결제 및 담보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각국 감독당국은 자국 증권을 국외담보로 활용하는 상대국 중앙은행과 관련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와 위험 정

보를 공유하고 각국은 증권결제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자국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국외담보 수용에 따른 위험관리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강원진·이병렬,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 pp.32-33.
- 김서영, “지급결제제도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1.
- 백미연,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에서의 범유럽 지급결제수단 도입 추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7호, 금융결제원, 2007.
- 이병렬, “미국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CHIPS와 ACH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 \_\_\_\_\_,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고객보호관련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1권 1호, 2009.
- \_\_\_\_\_, “전자결제제도에서 거래은행간 자금이체에 따른 주요쟁점 비교-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2호, 2011.
- \_\_\_\_\_, “EU의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타넷과 세파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 진재석, “유로지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4호, 금융결제원, 2008.
- 홍경식, 유로지역위기와 TARGET2 불균형논쟁, 한국은행 프랑크 푸르트사무소, 2012.
- 한국금융연구원, “유럽연합, 단일결제시스템 본격 가동”, 주간금융브리프 제17권 제6호, 2008.
- 한국은행, 유럽의 지급결제제도대변혁과 향후 전망, 2008.
- \_\_\_\_\_,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보도자료, 한국은행, 2009.
- 吉村昭彦·白神猛, “歐州における決済サービスの新たな法的枠組み：決済サービス指令の概要”, 金融研究, 日本銀行金融研究所, 2009.
- 大橋千夏子, “通貨統合後の歐州のペイメントシステムについて”, 日本銀行調査月報, 1998.
- 株式會社NTTデータ經營研究所, “歐米の小口決済システム(ACH)及び銀行のシステム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2015.
- 野村敦子, “歐米の金融イノベーションの動向—リテール決済を中心とした最近の



- 動きー”,次世代の國づくり, 2015.
- 中村眞志, “單一ユーロ決済權 (SEPA) の形成に關する一考察”,*經濟學研究*, 第17卷第2号, 2009.
- Bech, M., and Soramaki, K., “Liquidity, Gridlocks, and Bank Failures in Large-Value Payments Systems, Central Banking Publications”, *E-Money and Payment System Review*, 2001.
- BIS,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CPSS Publications No. 64, Basel, Switzerland, 2004.
- \_\_\_\_\_, New Developments in Large-Value Payment System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Publication No 67, May, Basel, Switzerland, 2005.
- \_\_\_\_\_,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2007, BIS, 2007.
- Bollen, Rhys, “European Regulation of Payment Services—The Story So Far”,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Regulation*, 22 (9), 2007.
- Bolt, W., and Humphrey, D., Public good issues in TARGET: natural monopoly, scale economies, network effects and cost allocation, ECB Working Paper Series, No.505, Frankfurt am Main: European Central Bank, 2005.
- 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 SEPA 2008 : Uniform Payment Instruments For Europe, 2007.
- Carbo-Valverde, S., and Linares-Zegarra, J.M., How effective are rewards programs in promoting payment card usage? Empirical evidence, ECB Working Paper Series, No. 1141, Frankfurt am Main: European Central Bank, 2009.
- De Seze, N., TARGET2: from concept to reality, Banque de France Bulletin Digest, No. 149, 2006.
- Espana, R., and Gorjon, S. (2005), The European Payment Landscape: TARGET2 and SEPA, Banco de Espana, Payment Systems Department, June.
- European Association of Public Banks (EAPB), *A Possible Framework for the Single Payment Area in the Internal Market*, Position Paper of the EAPB on the Working Document of the Internal Market DG, 2002.
- European Central Bank (ECB), “Opinion of European Central Bank of 26 April 2006 on a Proposal for a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ECB/2006/2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109, 2006.
- \_\_\_\_\_, “Single Euro Payments Area (SEPA): From Concept To

- Reality", Fifth Progress Report, 2007.
-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s Policy 2005 - 2010*, 2005.
- \_\_\_\_\_, *Consultative Paper on SEPA Incentives*, 2006.
-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Report 2007, SEC (2007) 1696, 2007.
- European Payments Council(EPC), Making SEPA a Reality: Implementing the Single Euro Payments Area, EPC066-06 Version 1.4, 2007a.
- \_\_\_\_\_, SEPA Credit Transfer Scheme Rulebook, 2007b.
- Holthausen, C., and Rochet, J.-C., Efficient Pricing of Large-Value Interbank Payment System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38, No.7, 2006.
- Humphrey, D., Payment Scale Economies, Competition and Pricing, ECB Working Paper Series, No. 1136, Frankfurt am Main: European Central Bank, 2009.
- Millard, S., and Saporta, V., "The future of payments, Bank of England," *Financial Stability Review*, Issue No. 19, 2005.
- Racocha, P., The Payment Systems and the Financial Stability, Keynote Presentation at Conference "Payment System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rague, 2004.
- Selgin, G., "Wholesale Payments: Questioning the Market-Failure Hypothesi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4, no. 3, 2004.
- Skinner, C., *The Future of Finance After SEPA*, Chichester; Wiley John & Sons, 2008.
- Trifonova, S., Financial Innovations in the Euro area Payment and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7853523>(검색일 : 2015.8.21)
- Van Empel, M., "Retail Payment and the Arduous Road to SEPA", *Common Market Law Review*, Vol.46, No.3, 2009.

## ABSTRACT

### A Study on the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n EU

Byoung-Kwon CHOI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at are the key financial innovations in the euro area electronic payment systems. TARGET2 is the RTGS-system provided through the Eurosystem. It is used for settling central bank operations, for large interbank transfers in euro and also for other euro-denominated transfers. The specific features of TARGET2 include processing in real time, settlement in central bank money and immediate finality. In addition, the SEPA is a payment-integration initiative of the European Union for simplification of bank transfers denominated in euro. In particular, the main innovations consist of the completion of the phased migration to the TARGET2 infrastructure, and the introduction of a single retail payment market in euro - the SEPA and its products, schemes and frameworks. As the study analyse, the key innovations consist of the TARGET2 introduction, SEPA establishment and migration towards the T2S system. These innovations will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ehavior in stress situations and to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euro area financial system. Moreover,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payment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s will further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financial markets, as well as to their higher competitiveness.

Keywords : TARGET2, SEPA, Electronic Payment System